

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3차 본회의 (2015. 5. 27)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# 목 차

1	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온천의 공동수급 관리 조례안 -----	5
4	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	7

[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 ]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5. 1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5. 1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5. 26.

## 2. 개정이유

-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규제개혁추진단 ‘폐지’ (안 제3조)
- 나. 규제개혁 분장사무 업무 이관 (안 제3조)
  - 규제개혁추진단 ⇒ 기획감사실

## 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으며,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음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5. 1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5. 1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5. 26.

## 2. 개정이유

-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추가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휴가 대상을 신설함(안 제23조제11항)
  - (현행)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  - 재직기간 20년 이상 : 10일
  - (신설)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순화, 조직개편 사항 반영, 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
  - 자 → 사람, 잔무 → 남은 업무, 행정안전부령 → 총리령
  - 여자 → 여성, 전염병 → 감염병

## 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추가 20일 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'특별휴가 대상'을 신설하고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순화와 조직개편사항의 반영, 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,
-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,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5. 1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5. 1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5. 26.

## 2. 제정이유

- 가조온천지구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·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군유 온천공의 온천수 급수권자를 정함(안 제3조)
  - 급수권자 : 군수
- 나.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  -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온천수 공급급수 계약을 체결하고,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함.
- 다.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  -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시설분담금 납부
  - 시설분담금은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설치에 사용
- 라.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
  -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

-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, 기본요금과 초과 요금의 합계로 징수

**마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**

- 사용료, 시설분담금, 공사비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

#### **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**

- 이 제정 조례안은 가조온천지구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·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,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# **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



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5. 1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5. 1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5. 26.

## 2. 개정이유

- 수승대 진출입 자동화시스템 설치, 시설 운영경비 증가 등에 따른 수승대 시설이용료 조정 및 징수 기준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장, 오토캠핑장, 썰매장 시설이용료 징수 금액 변경 및 축제극장 시설이용료 징수 기준 신설(안 제7조)
- 나.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의 순화
  - 인 → 명      동일 → 같은      썰매장 → 썰매장, 축제극장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수승대 진출입 자동화시스템 설치, 시설 운영경비 증가 등에 따른 수승대 시설이용료 조정 및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,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